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16호
2. 제 출 자 : 김평남 의원
3. 제출일자 : 2019. 8. 5.
4. 회부일자 : 2019. 8. 13.

II . 제안이유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남자화장실 소변기 설치현황을 보면 소변기 간에 가림막(칸막이)이 없는 화장실이 많아, 감수성이 풍부한 10대 남학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 수치심을 느끼는 남학생들이 많이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임의로 규정되어 있는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칸막이)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여 남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임의 규정인 남자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설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 함.(안 제4조제6호 개정)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2. 예산조치 :

○ 비용추계서 (별첨)

3. 기 타 :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입법예고(2019.08.19.~08.26)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5일 김평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816호로 발의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남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남자 공중화장실 30곳 중 10곳에 용변 중인 남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¹⁾
- 이러한 남성 변기의 가림막 미설치 문제는 일반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남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소변기의 가림막 설치하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남학생 화장실 내 소변기 가림막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소변기 47,934개 중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된 것은 전체의 10%인 4,794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약 90%

1) MBN뉴스, “허울 뿐인 대책...내부 보이는 남자화장실 여전”, 2019.0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1375921>)

에 달하는 소변기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²⁾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초·중·고등학교 남학생 화장실 내 소변기에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남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4조제6호는 현재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때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³⁾
- 다만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변기 가림막의 설치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변기에 사용되는 “칸막이”와 소변기에 사용되는 “가림막”의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기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경우 규범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칸막이”를 “가림막”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2)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각급학교 남자화장실에 설치된 소변기 가림막 설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019년 8월 19일부터 각급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임.

다만 본문에서 명시한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수치는 동 조례안의 비용추계시 사용한 수치를 이용한 것으로, 동 수치는 전체 소변기 숫자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화장실이나 화장실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한 숫자를 전체의 약 10%로 추정하여 산출한 수치로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수치라 할 수 있음.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개정, 2018. 1. 1 시행)

별표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됩니다.

- 한편 부칙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부칙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의 설치 의무는 이미 상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부칙에 3개월의 경과규정을 부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⁴⁾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 08. 21.).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2, 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39호, 2017. 1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2호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3호의2의 개정규정
3. 별표 제18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의2. 제1호에 따른 대·소변기의 수에 제14호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용 대·소변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뒷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